

개인정보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서

2021. 5.

개인정보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서

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부터 제38조 및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8조에 따라 개인정보 정보주체 권리행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함

□ 관련 근거

-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부터 제38조 (정보주체의 권리 보장)
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8조 (정보주체의 권리 보장)
-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~ 제11호 서식

□ 목적

-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마련

□ 권리행사의 기준 및 구분

- 기본원칙
 1.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
 2. 개인정보처리자는 정해진 기간(10일) 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3.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.
- 권리행사의 구분
 1. 개인정보의 열람
 2.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
 3.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

□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

○ 정보주체(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1. 개인정보 열람요구
2.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요구
3. 삭제요구
4. 처리정지요구

▶ 개인정보 열람 요구

한국법제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‘개인정보 보호법’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‘개인정보 보호법’ 제35조제5항에 의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-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- ②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-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 -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 -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 -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
▶ 개인영상정보(CCTV) 열람 요구

- 정보주체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(이하 "열람등"이라 한다)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.
- CCTV 등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요구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하여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근거: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

▶ 처리정지 요구

한국법제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‘개인정보 보호법’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‘개인정보 보호법’ 제37조제2항에 의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-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②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
▶ 정정·삭제 요구

한국법제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‘개인정보 보호법’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▶ 청구방법

위 항목에 따른 권리 행사는 **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**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방문,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개인정보보호 포털(www.privacy.go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한국법제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
- 개인정보(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 : 별첨 참조
- 위임장 : 별첨 참조

▶ 이의 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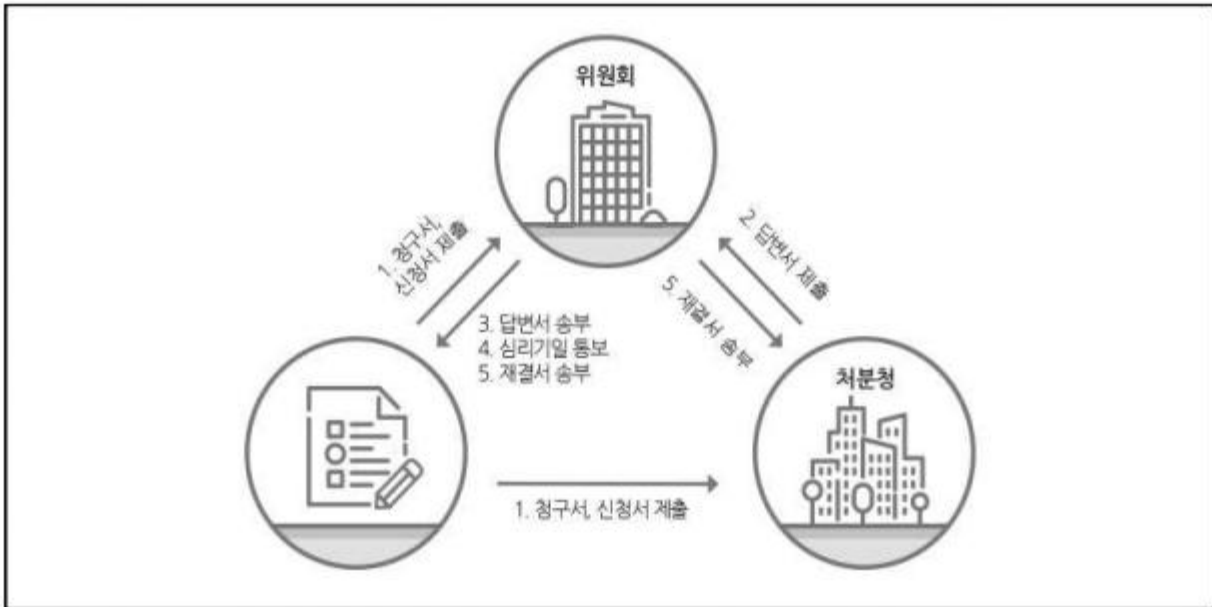
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,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① 이의 제기 방법

- 한국법제연구원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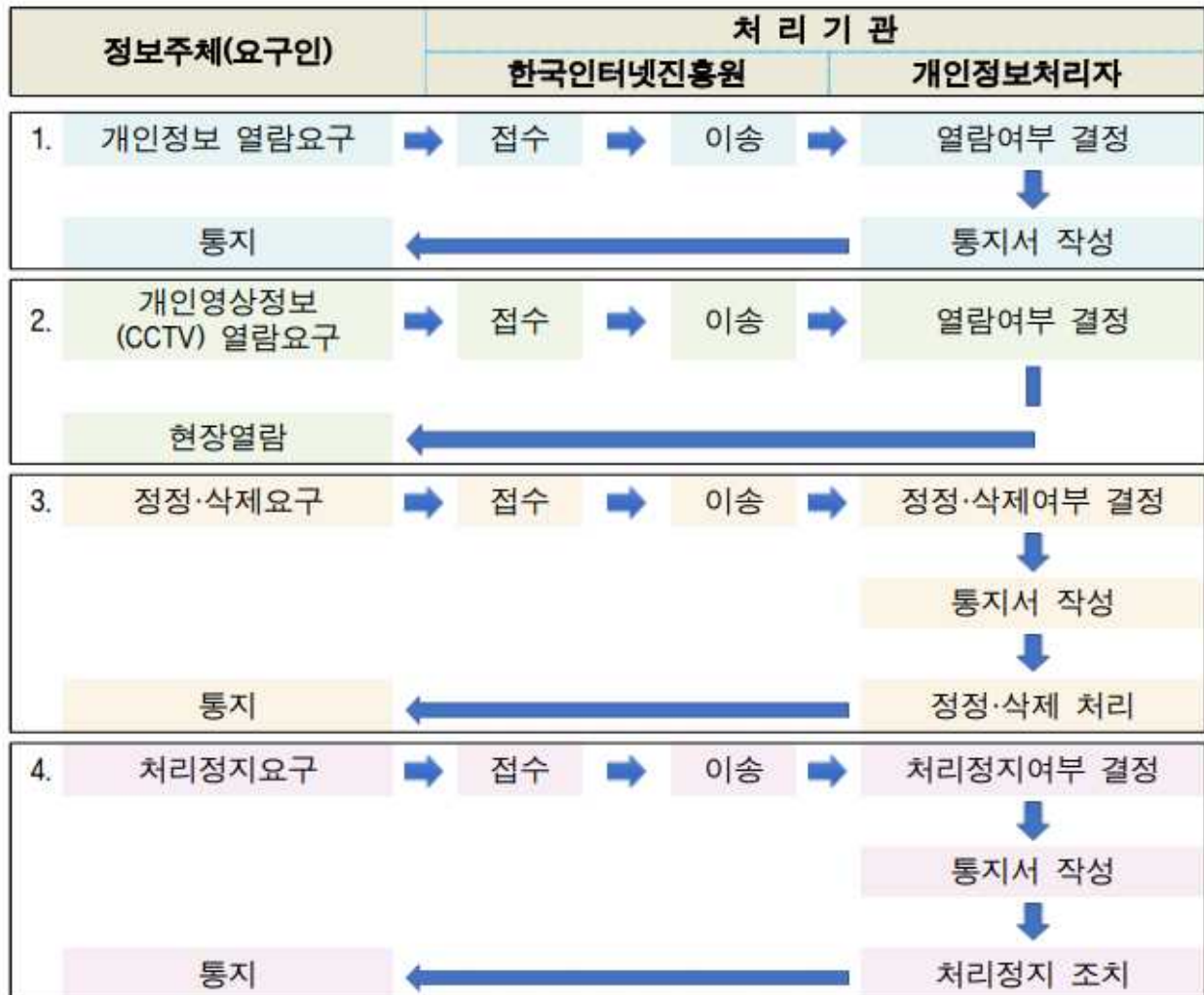
※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-행정심판안내)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.

② 이의 제기 절차



□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

<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 >



[별첨 1]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

■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[별지 제8호서식]

개인정보 열람 요구서

※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 이내
정보주체	성 명	전 화 번 호	
	생년월일		
	주 소		
대리인	성 명	전 화 번 호	
	생년월일	정보주체와의 관계	
	주 소		
요구내용	[]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[] 개인정보 수집·이용의 목적 []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[]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[]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		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.

년 월 일

요구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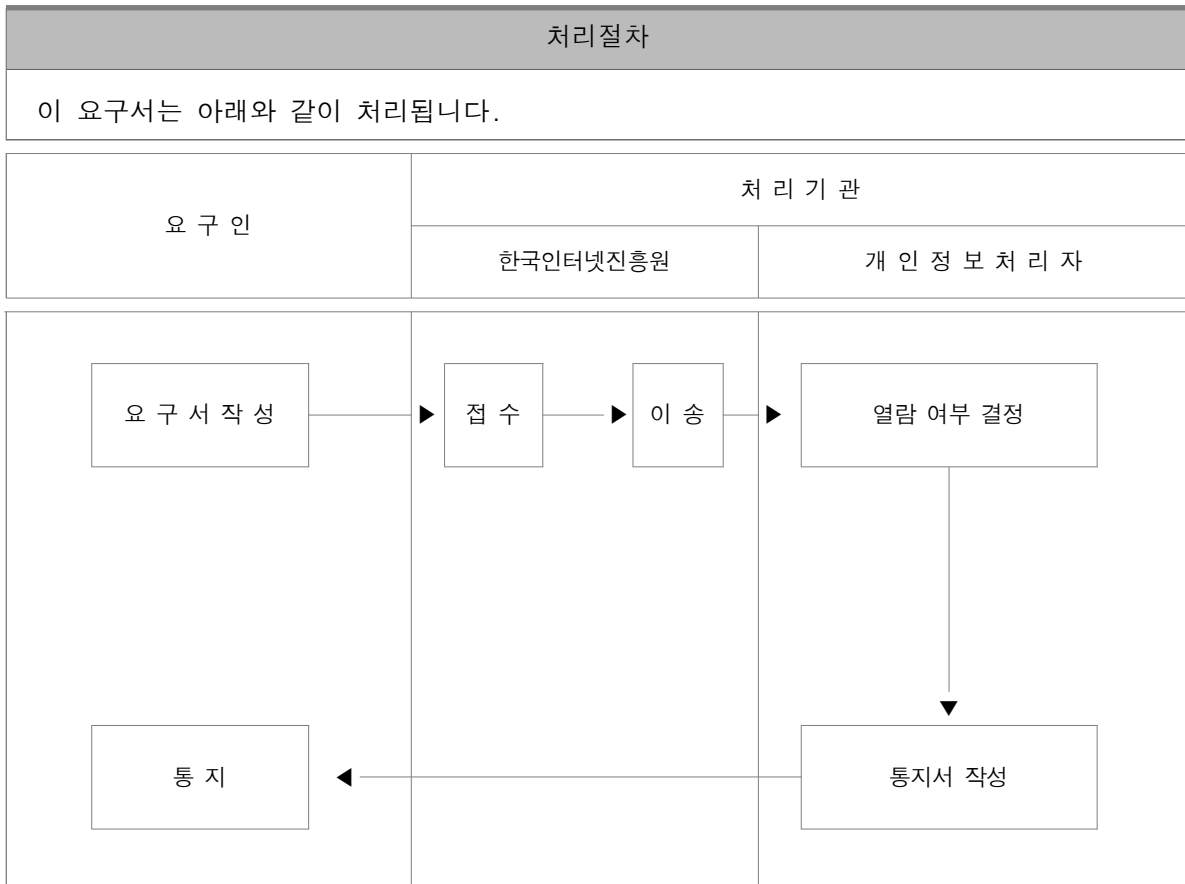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하

작성 방법

1. '대리인' 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.
2. '요구내용'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[√] 표시를 합니다.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

[별첨 2] 개인정보 ([] 열람 [] 일부열람 [] 열람연기 [] 열람거절 통지서

■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[별지 제9호서식]

개인정보 ([] 열람 [] 일부열람 [] 열람연기 [] 열람거절) 통지서

(앞 쪽)

수신자 (우편번호: , 주소:)

요구 내용			
열람 일시			열람 장소
통지 내용 ([] 열람 [] 일부열람 [] 열람연기 [] 열람거절)			
열람 형태 및 방법	열람 형태	[] 열람·시청 [] 사본·출력물 [] 전자파일 [] 복제물·인화물 [] 기타	
	열람 방법	[] 직접방문 [] 우편 [] 팩스 [] 전자우편 [] 기타	
납부 금액	①수수료	②우송료	계(①+②)
	수수료 산정 명세		원 원 원
사유			
이의제기방법	※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.		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제3항·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발신명의 직인

210mm×297mm [신문용지 54g/m²]

유의사항

-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 -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: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 -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: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-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.
 -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: 수입인지
 -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: 수입증지
 -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: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

※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.
- 열람제한,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
[별첨 3] 개인정보 ([] 정정·삭제, [] 처리정지)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

■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[별지 제10호서식]

개인정보 ([] 정정·삭제, [] 처리정지)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

수신자 (우편번호: , 주소:)

요구 내용	
<input type="checkbox"/> 정정·삭제 <input type="checkbox"/> 처리정지 조치 내용	
<input type="checkbox"/> 정정·삭제 <input type="checkbox"/> 처리정지 결정 사유	
이의제기방법	※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.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발신명의 직인

유의사항

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'이의제기방법'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신문용지 54g/㎡]

[별첨 4] 위임장

■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[별지 제11호서식]

위임장

위임받는 자	성명	전화번호
	생년월일	정보주체와의 관계
	주소	
위임자	성명	전화번호
	생년월일	
	주소	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(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)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위임자

(서명 또는 인)

0000 귀하